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5가합53031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6. 7. 1 선고 2015나207473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5가합530312 판결

전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可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론종결 2015. 10. 21.

판결 선고 2015. 11. 11.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525,362,729원 및 그 중 523,434,283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 B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262,501,181원 및 그 중

261,398,635원에 대하여 각 2014. 12. 26.부터 2015. 7. 6.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2014. 6. 25.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C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6. 접수 제138959호로 마친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B는 연대하여 525,362,729원 및 그 중 523,434,283원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회사,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62,501,181원 및 그 중 261,398,635원에 대하여 각 2014. 12.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7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1. 3. 15.부터 2014. 3. 14.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 보증금액 270,000,000원(대출예정금액 300,000,000원, 보증비율 90%), 보증기한 2014. 3. 14.(이후 신용보증원금은 261,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5. 3. 13.로 각 변경되었다)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는데,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받았다. 한편, 피고 B, C은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3. 4. 1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7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3. 4. 15.부터 2014. 4. 14.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 보증금액 270,000,000원(대출예정금액 300,000,000원, 보증비율 90%), 보증기한 2014. 4. 14.(최종적으로 신용보증원금은 261,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4. 10. 31.로 각 변경되었다)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는데,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받았다.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제1, ② 각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해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되어있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라. 그 후 원고는 2014. 12. 1.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4. 12. 26.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제1, ② 각 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 합계 523,434,283원(= 이 사건 제1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 261,398,635원(= 원금 261,000,000원 + 이자 398,635원) + 이 사건 제2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 262,035,648원(= 원금 261,000,000원 + 이자 1,035,64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외에 원고는 본건에 따른 채권보전비용으로 2,198,057원을 지출하였다가 그 중 1,095,511원을 회수하여 현재 남은 미회수 채권보전비용은 1,102,546원(= 2,198,057원 - 1,095,511원)이고, 이 사건 제2약정과 관련하여 825,900원의 위약금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 C은 2014. 6. 25. 피고 D과 사이에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D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138959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B,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회사, B는 연대하여 이 사건 제1, ② 각 약정에 따라 합계 525,362,729원(= 이 사건 제1, ② 각 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523,434,283원 + 채권보전비용 1,102,546원 + 이 사건 제2약정 관련 위약금 825,900원) 및 그 중대위변제금 523,434,283원에 대하여, ② 피고 C은 피고 회사, B와 연대하여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합계 262,501,181원(=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261,398,635원 + 채권보전비용 1,102,546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61,398,635원에 대하여 각 대위변제일인 2014. 12.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5. 7. 6.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것)이 정한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2015. 10. 1.이후에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2015. 9. 25. 대통령령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고,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10. 1. 이후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5. 9. 30.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연 20%의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연 15%의 법정이율이 각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 이후로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인 2011. 3. 15. 및 2013. 4. 15.에 이미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제1, ② 각 약정이 체결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8. 1. 조세체납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2014. 12. 1. 특수채권 연체(신용카드 연체)가, 2014. 12.26.부터 2015. 4. 24.까지 사이에 10건의 일반대출금 연체가 각 발생하였고, 그 와중에 신용관리정보등록(국세체납 포함)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할 것이고, 실제로 원고가 2014. 12. 26. 피고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피고 C의 채무초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9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의 적극,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피고 C은 피고 D과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적극재산

순번	부동산 등	재산가액
1	용인시 처인구 E, 3층 301호	70,000,000원
2	서울 강남구 F, 2층 202호	490,000,000원
3	용인시 처인구 G, 102동 1704호	166,000,000원
합계		726,000,000원

나) 소극재산

순번	채권자	채무액
1	국민은행	25,347,000원
2	우리은행	97,532,000원
3	한화생명보험	14,000,000원
4	KB국민카드	4,856,000원
5	하나SK카드	4,999,000원
6	롯데카드	4,448,000원
7	국민은행	14,890,000원
8	신용보증기금	261,398,000원
9	현대캐피탈(주)	1,210,000원
10	H	220,000,000원
11	D	50,000,000원
12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55,571,408원
합계		754,251,408원

2)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자신은 2013. 9. 25.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 그 변제를 종용받던 피고 B가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채무변제기간을 확약할 수 없고 위 부동산에 담보가 많이 설정되어 있으니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자고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참조), 피고 D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C이 피고 D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C과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D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6. 접수 제13895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회사, B,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회사, B,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원, 판사 한동석, 판사 박 민